

사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 경과

- 제 출 : 2007. 10. 2.(사천시장)
- 회 부 : 2007. 10. 2.(총무위원회, 의안번호 제67호)
- 상 정 : 2007. 10. 9.(제117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상정, 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(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)

가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인의 연령 및 수를 법 취지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

나. 주요내용

- 경상남도 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는 주민의 연령을 20세 이상을 19세 이상으로 하고, 청구인의 수를 200명이상에서 150명이상으로 조정함(안 제2조)

다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최진기)

- 개정조례안은 제명 띄어쓰기와 함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일치시키고, 「지방자치법」의 개정 시행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인의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하고,
-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인원을 200명이상에서 150명이상으로 완화함으로서 주민감사청구가 한층 수월해져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,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,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

없을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: 없음